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4
----------	-----

2023. 8. 29.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8. 18. 손민기 의원 등 13명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9.)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손민기 의원)

- 강남구의회 정책 역량을 높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와 같은 각종 의견 청취 행위에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정의 및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진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라.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현재 강남구의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지난 8대까지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9대 개원 이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의정활동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2건(손민기의원, 김진경의원)의 토론회 개최 실적이 있음. 이와 같은 토론회 개최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보임. 조례 제정으로 토론회 등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역할로 정책의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토론회 등의 제도화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의회 연간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예산도 편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토론회 개최가 특정한 분야, 위원회,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토론회등 통한 언론홍보에도 한층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한편, **토론회의 운영**은 주민과 관련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사 또는 회의를 개최하는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1)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사례>2)와 같이 법규형식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강남구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는 **“현안사항”**을 의회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현안사항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워 추상적·포괄적인 정의규정은 바람직한 입법형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이고 (이하“의회”라 한다) 및 (이하“구민”이라 한다) 조문은 (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띄어쓰기 하는 것이 입법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제2호**에서는 **“토론회 등”**을 정의하고 있으나 <사례>3)와 같이 **“토론회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이하 각 해당 조문에서도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4)에 따른 공

1)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3)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 **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의 일부**이므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3조(운영원칙)**에서는 의회 의장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1항** 중 (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조문은 (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띄어쓰기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4조(신청 및 승인)제1항**에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주체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제1조에서 강남구의회가 각종 토론회 등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음.** 의회 또는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나 의원 개인은 합의제기관 구성원의 일원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바 토론회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5)에 따른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6)에

- ②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출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진출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출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5)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

서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 어디에도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 의정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  
여짐.

- 따라서, 연구활동비(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 등)를 위원회, 연구  
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연구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  
준」<sup>7)</sup> 및 개별조례<sup>8)</sup>에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으며,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에게도 토론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의정운  
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예시><sup>9)</sup>와 같이 교섭단체도 토론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제  
1항 중 (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조문은(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별  
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띄어쓰기하는 것이 입법  
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 1. 의정운영공통경비

- ① 경비성격: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

##### 5. 의원정책개발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지원  
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토론회·세미나 개최시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 9) <예시>

-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  
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교섭단체가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  
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지원 및 관리)제1항**에서는 토론회 등의 지원,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회의록 등을 의회사무국에서 지원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이러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현재 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음.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띄어쓰기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진행)**에서는 토론회 등에 “발표회” 가 포함되어 회의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행사” 가 적절하다고 보임. 따라서 조문을 <예시><sup>10)</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서는 토론회 등을 주최시 위원회 또는 의원이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협조는 의회의 기관장인 의장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결과의 반영 등)**에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을 삭제하고 <예시><sup>11)</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9조(실비보상)**에서는 경비지급의 주체가 없는 바 “의장은 토론회 등의” 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종합의견

### 10) <예시>

① 위원회 주최의 토론회등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그 밖의 토론회등의 주최는 해당 개최자의 대표자가 주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람이 주관할 수 있다.

### 11) <예시>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정책수립에 반영하거나 위원회의 안전 심사 또는 교섭단체의 원내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토론회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안건은 의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토론회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보이나 토론회 운영은 주민과의 관계가 아닌 의회 내부조직 운영상의 문제로 판단되는 바 필요하다면 **의회규칙** 또는 **행정규칙**<sup>12)</sup>의 입법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

12)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회예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회예규)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204

제안일자: 2023. 8. 29.

제안자: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일부 미흡한 용어와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조문 정비(안 제2조 ~ 제3조)
- 나. 토론회등의 신청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4조)
- 다. 토론회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진행, 관계기관 협조요청,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흡한 조문 정비(안 제5조 ~ 제8조)
- 라. 토론회등의 실비보상 대상 범위를 수정함(안 제9조)
- 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이하“의회”라 한다)”를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이하“구민”이라 한다)”를 “(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이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등”으로 하고, 제2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하며, 제3항 중 “토론회 등”을 각각 “토론회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를 “접수된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를 “개최일로부터 7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토론회 등”을 각각 “토론회등”으로 하고, “회의”를 “행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사회자는 토론회등”로 하고,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토론회등”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을 “의장은 토론회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토론회등 회의록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년 월 일

신청자: (인)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 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 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 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p> <p>2. "<u>토론회 등</u>"이란 제1호의 현 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 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 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 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 외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u>이하 "의회"라 한다</u>)- ----- ----- ---(<u>이하 "구민"이라 한다</u>)--- ----- -----.</p> <p>2. "<u>토론회등</u>"----- ----- ----- ----- ----- ----- ----- ----- -----.</p>
<p>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p>	<p>제3조(운영원칙) ① ---(<u>이하 "의</u></p>

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민주적  
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  
렴된 국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  
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  
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  
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  
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  
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

장”이라 한다)은 토론회등-----  
-----  
-----  
-----.

② ----- 토론회등-----  
-----  
-----  
-----.

③ ----- 토론회등-----  
-----  
-----  
----- 토론회등-----  
-----.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  
-----  
-----  
------(이하 “의원”이라 한  
다)이 토론회등-----  
-----  
-----  
- 별지 제1호서식-----

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 에 대한 지원 및 연간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집행은 의회 사무국에서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

-----  
-----.

② ----- 접수된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  
-----.

③ ----- 토론회 등 -----  
-----  
----- 개최일로부터 7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  
-----.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 -----  
-----.

② ----- 별지 제2호 서식 -----  
-----.

제6조(진행) ① ----- 토론회 등 -----

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  
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  
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  
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  
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  
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 행사-----

----- 토론회등-----

-----.

② 사회자는 토론회등-----

-----

-----, 토론회등-----

-----

-----

-----.

③ 토론회등-----

-----.

-----,

-----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등-----

----- 토론회등-----

-----

-----, -----,

-----

-----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  
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  
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  
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

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  
-----  
-----  
-----  
-----  
-----.

② 토론회등-----

-----  
-----  
-----  
-----.

제9조(실비보상) 의장은 토론회등

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  
-----  
-----  
--.



[별지 제2호 서식]

<b>토론회 등 회의록</b>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별지 제2호서식]

<b>토론회등 회의록</b>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년    월    일 작성자: _____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등에 대한 지원 및 연간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의장은 토론회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토론회등 회의록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년 월 일

신청자: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손민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
----------	-----

발의연월일: 2023. 8. 18.

발 의 자: 손민기·한윤수·전인수·  
복진경·강을석·이동호·  
오은누리·노애자·안지연·  
김형곤·이향숙·김진경·  
박다미 의원(이상13인)

### 1. 제안이유

강남구의회 정책 역량을 높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와 같은 각종 의견 청취 행위에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정의 및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진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라.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연간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토론회 등 회의록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